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자치행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555, FAX : 3396-8613, E-mail : leehy052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